

# 가족회사운영규정

제정 2014.04.01

1차 개정 2017.08.01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에서 시행하는 가족회사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'가족회사'라 함은 본 대학과 기술·경영지도, 공동연구, 취업, 교육, 현장실습, 인턴십, 발전기금 기탁 및 공용장비 이용하는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. <개정 2017.8.1.>
2. '기업체'란 본 대학과 협력이 필요한 기업, 연구소,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.
3. '지도교수'란 본 대학의 전임교원으로써 개별 가족회사와 관련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교원을 말한다.
4. '가족회사 대표'란 본 대학과 가입된 가족회사 전원을 대표하는 자로 가족회사 중 대표로 선출된 기업체의 대표이사를 말한다.

## 제2장 추진체계

**제3조(담당부서)** ①담당부서는 가족회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대학 산학협력단 산학협동팀에서 담당한다.

②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가족회사의 승인, 탈퇴 및 정보관리 <개정 2017.8.1.>
2. 가족회사 등급관리 및 가족회사 관련 교원업적평가
3. 가족회사 상담 및 지원
4. 가족회사의 임직원 교육 및 기술개발 등 지원활동
5. 기술, 경영, 마케팅, 특허, 디자인 등 종합지원
6. 기타 가족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
**제4조(가입)** ①가족회사는 제2조 1항에 의거 본 대학과 MOU를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17.8.1.>

② (삭제) <2017.8.1.>

**제5조(협약서발급)** ①가입이 완료된 가족회사에 대하여는 가족회사협약서를 발급한다.  
<개정 2017.8.1.>

②가족회사가 분실 등의 이유로 가족회사협약서를 재발급 신청할 경우 담당부서는 재발급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탈퇴 등)** ①가족회사가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휴·폐업으로 확인될 경우에 본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탈퇴 처리한다.

②가족회사가 사기 등 명예를 실추하여 더 이상 본 대학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**제7조(가족회사에 대한 지원)** 본 대학은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기술 및 경영 자문, 공동연구
2. 공용장비의 이용 및 연구소 설립
3. 취업 및 현장실습(인턴십)
4. 교육 및 기술교류회

**제8조(등급관리)** ①본 대학은 가족회사의 산학협력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으며, 등급관리기준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.

②본 대학은 가족회사의 등급에 따라 가족회사에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위원회 구성)** 본 대학의 가족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10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가족회사에 대한 등급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
2. 가족회사 탈퇴 등에 관한 사항
3. 가족회사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의 부의한 사항

**제11조(의결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가족회사 활동

**제12조(가족회사 권리 및 의무)** ①가족회사는 본 대학이 제공하는 산학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가족회사는 본 대학의 가족회사로서의 신의 성실 의무를 가진다.

**제13조(운영회의)** 기업과 대학 간 상호연계 협력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14조(가족회사 협의회)** ①가족회사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족회사 협의회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.

②가족회사 협의회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가족회사 협의회 대표는 가족회사 전원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의 건의
2. 대학의 중요한 행사의 참여
3. 기타 필요한 사항

④가족회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(대표)를 둘 수 있다.

**제15조(장학금 기탁)** 가족회사는 본 대학에 가족회사 산학협력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다.

## 제4장 보 칙

**제16조(정보보호)**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기타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거쳐 산학협력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